## <u>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</u> <u>일부개정조례안</u>

## 제 안 설 명

##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 진 술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 정진술 의원입니다.

지난 3월 26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선납부과원칙의 예외범위를 축소하여 후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일시적 체납문제를 해소하고, 복구공사비용 중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